

[공모펀드 변경안내]

가. 펀드명 : 유진채피언글로벌월배당인컴ETF혼합자산투자신탁[재간접형]

나. 변경시행일 : 2023년 7월 12일(수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라. 주요 변경 내용 :

- 1) 투자위험등급 변경(3등급 → 4등급)
- 2)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- 3)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3.2.20. 시행)
- 4)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2023.01.01. 시행)

[(간이)투자설명서]

| 항 목 | 정정사유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요약정보 | | | |
| 투자 위험 등급 | 설정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| -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- 3등급(다소높은위험) | - 실제 수익률 변동성 - 4등급(보통위험) |
| 보수비용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| -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|
| 운용전문인력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| -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|
| 투자실적추이 (연평균 수익률)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| -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집합투자기구 연혁 신설 | <신 설> | 1) 투자위험등급 변경(3등급 → 4등급) 2)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3)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3.2.20. 시행) 4)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(2023.01.01. 시행) |
|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| -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|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| <u>변경 전 1)</u> | <u>변경 후 1)</u> |
|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|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

| | | | |
|--|--|--|--|
| 수익구조 나. 세부 투자전략 4) 포트폴리오 구성현 황 (예시) | | |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위험. 다. 기타투자위험 |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 정사항 반영 | <신 설> | -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 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 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. |
|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” | 설정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변 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| -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: 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- 3등급(다소높은위험) - 수익률 변동성: 14.3060% | -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: 실제 수익률 변동성 - 4등급(보통위험) - 수익률 변동성: 7.8810%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“나. 집합투 자기구에 부과되는 보 수 및 비용”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| <u>변경 전 2)</u> | <u>변경 후 2)</u> |
| 14. 이익 배분 및 과세 에 관한 사항, “나. 과 세” (4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| 개정세법 반영 | <u>변경 전 3)</u> | <u>변경 후 3)</u> |
|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| | | |
| 1. 재무정보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, 업 데이트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| <u>변경 전 4)</u> | <u>변경 후 4)</u> |
| 2. 연도별 설정 및 환 매 현황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| -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 데이트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운 용실적 (세전 기준)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| -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 데이트 |
| 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| | |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| - |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 데이트 |

변경 전 1)

주1) ~ 주2) <생 략>

주3) ~ 주5) <신 설>

변경 후 1)

주1) ~ 주2) <현행과 같음>

주3)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
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.

주4)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주5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변경 전 2)

주1) ~ 주2) <생략>

주3) 총보수·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(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

주4) <생략>

변경 후 2)

주1) <현행과 같음>

※ 기타비용 : 감사보수, 펀드평가보수, 채권평가보수, 펀드결제수수료, 지수사용료, 해외거래예탁비용, 해외분담금, 보관대리인보수 등.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| 구분 | 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타비용 | 2,790 |

주2) <현행과 같음>

※ 증권거래비용 : 국내주식매매수수료, 국내채권매매수수료, 장내파생매매수수료, 기타매매수수료, 콜중개수수료, SWAP매매수수료, 대차관련수수료, REPO수수료, 해외주식매매수수료, 해외채권매매수수료,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,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.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| 구분 | 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증권거래비용 | 3,626 |

※ 금융비용 :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

| 구분 | 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금융비용 | - |

주3)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주4) <현행과 같음>

변경 전 3)

(4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|---|
| 세액공제 | 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 |

| | |
|----------|--|
| 과세이연 |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|
| 과세체계 다양성 | 퇴직연금 수령방법(연금인출,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)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|

변경 후 3)

(4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|--|
| 세액공제 | -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.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 |
| 과세이연 |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|
| 과세체계 다양성 | 퇴직연금 수령방법(연금인출,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)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|

변경 전 4)

※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, 주식의 매매회전을 <신 설>

변경 후 4)

※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

(단위: 백만원, %)

| 구분 | 당기(2022.06.28 - 2023.06.27) | | | 전기(2021.06.28 - 2022.06.27)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거래 금액(A) | 거래비용 | | 거래 금액(A) | 거래비용 | |
| | | 금액(B) | 거래비용 비율(B/A) | | 금액(B) | 거래비용 비율(B/A) |
| 주식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주식외의증권(채권등) | 3,626 | 3.6262 | 0.1 | 3,602 | 4.0000 | 0.1 |
| 부동산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장내파생상품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장외파생상품 | - | - | - | - | - | - |
| 기타(REPO,대차,콜 등) | - | - | - | - | - | - |
| 합계 | 3,626 | 3.6262 | 0.1 | 3,602 | 4.0000 | 0.1 |

주)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, 포워드(장외파생상품)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.

※ 주식의 매매회전을

(단위: 주, 백만원, %)

| 주식 매수 | | 주식 매도 | |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(B) | 매매회전율(A/B) |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|
|-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수량 | 금액 | 수량 | 금액(A) | | | |
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
<끝>.